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 9. 17]
조례 제4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UN)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시행계획은 “증평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성폭력, 착취, 갈취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 단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밀재조사 등)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혹은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한 정밀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 회의, 수당 등 운영은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2.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업무담당 실·과장
2. 보건소장
3.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7.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